

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3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3. 10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1999. 3. 13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3. 24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사유

○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(스켈링)와 치아 흠메우기 진료에 대하여 실비수준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와 치아 흠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(안 제6조제1항)
○ 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(안 제6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와 치아 흠메우기 진료 등에 대하여 실비수준에서 비용징수 근거를 명시함은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의 보건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 하였음.

* ○ 치석제거 및 치아 흠메우기 징수 산출근거 및 예상분석
○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진료수가 기준액표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치석제거 보건소 수가기준액과 일반의원, 병원과의 가격 차이는?
- 답 : 일반병·의원은 보건소수가 기준액보다 3배정도 (60,000원) 임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